

조선시대 교육 관련 규정이 인성교육에 주는 함의

이상무 신태섭
한국교육개발원 이화여자대학교

Implications of Chosun Dynasty's Educational Regulations on South Korea's Character Education

Sangmoo Lee Tae Seob Shin*
Korean Educational Ewha Womans
Development University
Institute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5 2016
Revised Sept 22 2016
Accepted Sept 28 2016

Keywords:

Character Education,
Chosun Dynasty, Codes of
Law, School Regulations

주제어:

인성교육, 조선시대,
법전, 학교 규정

ABSTRACT

The Promotion of Character Education Act took effect in 2015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still are many confusions as to what constitutes character education.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regulations pertinent to character education from Chosun Dynasty. In this study, we analyzed articles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from codes of law of Chosun Dynasty. In addition we analyzed school regulations regarding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selective schools. We found that both the national policy and school regulations provided clear guidelines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at schools during Chosun Dynasty. This implies that even in Chosun Dynasty, schools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proper character to students.

국문초록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통교육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국가수준의 교육 관련 규정과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 인성교육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수준의 교육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선시대에도 국가 및 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었음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인성교육 관련 규정의 분석 결과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는 타인의 이해, 공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역량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Corresponding author, tshin@ewha.ac.kr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5년부터 실시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법령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인성교육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로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교육부, 2015). 인성교육진흥법은 또한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과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는 "핵심 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핵심 가치·덕목"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의미하며 "핵심 역량"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

인성교육에서의 공교육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은 기존의 교육정책과 차별화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정호, 2016). 일선 학교의 교장 및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인재, 2016). 예컨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가치·덕목"의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예, 효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강조되었던 기본예절 관련 내용과 함께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성 관련 내용을 강조하는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핵심 역량에 포함된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서구의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회성 역량(social skill)으로 인식함으로써(Lickona, 1996; Roseth, 2015)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예, 효 등과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내용과는 다른 성격의 인성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전통교육에서의 인성교육 방향 및 내용을 살펴본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전통교육에서 강조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공감·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역량을 강조해왔음을 알 수 있다(유한구, 1996). 홍신기(2007)는 논어에 나타난 교육사상의 전인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면서 교육의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교육내용의 구성은 지(知)와 인성(人性)의 조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의수(2007)는 인성의 대한 관점에는 크게 성선설, 성악설 및 중도적 입장의 세 부류가 있는데, 유가적 전통에서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론이 주

류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식론과 수양론을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지식교육과 인격교육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온전한 인간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용환(2015)은 조선시대 퇴계, 다산, 수운의 인성교육에 내포된 실천과제의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며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남상호(2016)는 서원교육의 내용을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으로 구분하며 특히 예약과 시교를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인성교육의 근원을 전통교육에서 찾으려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상당수는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다보니 다양한 사례들을 포섭하지 못하거나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국가 정책에서 강조된 인성교육 관련 규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만 제시될 뿐 이러한 국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시행된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다. 실제 전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박종배, 2006).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일례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확인해보면 '사습(士習)'이라는 단어가 전 시대를 통틀어 1,220회 등장한다. 이 단어는 주로 '사습이 해이해졌다' 또는 '사습을 바로 세운다' 등으로 자주 쓰이는데, '사습이 해이해졌다'는 말은 선비들이 공부에 매진하지 않거나, 선비들의 행실이 여러 모로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등장하는 말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는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관심 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전반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조선시대 학교의 교육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교육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의 구체적 사례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규정한 후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국가 교육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의 우리 교육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규정 내용 중 인성교육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과거 전통교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려고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조선시대 인성교육 관련 규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당시 교육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법전 규정에 포함된 인성교육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여 당시 인성교육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법전 규정의 구체적인 인성교육 관련 조항을 제시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선시대 전반적인 교육적 방향을 제시한 법전 이외에 당시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던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학교 규정 중 인성교육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균관(成均館)의 규정인 「학령(學令)」과 「학령」을 보완하기 위해 왕명에 의해 만들어져 후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학교모범(學校模範)」, 향교의 규정인 「북천향교학령(福川鄉校學令)」, 「무안향교교규(務安鄉校校規)」, 서원의 규정인 이황(李滉)의 「이산서원원규(伊山書院院規)」, 이이(李瑋)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 등의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교육 규정 중 인성교육 관련 조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인성교육 속에서 발견되는 조선시대 인성교육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III. 법전 규정에서 확인되는 인성교육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법전 규정에 확인되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조선시대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주요 법전에 나타난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경국대전』 이후에 등장하는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은 『경국대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보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경국대전』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禮典)」에 수록되어 있다.

「예전」에서도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권장할만한 일에 관한 내용은 '장권(獎勸)' 조에 수록되어 있다. '장권' 조에는 나라에서 권장할 만한 일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포상이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장권' 조는 「예전」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주로 예와 관련된 부분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권장할 만한 일을 다루고 있어서, 충분히 교육관련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장권' 조의 첫 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효우절의자는 매년 본조에서 기록한 후 계를 올려 권장한다.¹⁾

「예전」의 '장권' 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항은 다른 아닌 효우절의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다. 효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나 절개를 지킨 여성을 매년 예조에서 기록한 후 임금에게 보고하여 이 사람들에게 포상한다는 것이다. 소위 열녀문(烈女門)을 세워주는 것도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우절의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조항이 나온 뒤 바로 다음에 제시된 '오자등과자(五子登科者)'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오자등과자, 즉, 다섯 명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을 경우 그 부모에 대한 포상 규정하고 있다.

「장권」 조에 수록된 대부분의 내용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포상할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찌 보면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규정하는 여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항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나마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지식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 「장권」 조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조 대인 1785년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 무릇 정문(旌門)세우는 일·죽은 자에게 관직을 추서하는 일·호역(戶役)을 면제하는 일 등에 관해서는 승정원에서 임금의 전교(傳敎)를 받아서 중앙과 지방에 그 문서의 등본을 배포한다.

1) 『經國大典』 「禮典」 獎勸 조: 孝友節義者 每歲抄本曹錄啓獎勸.

○ 효자와 열녀로서 정문을 세워 주거나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여러 도(道)에서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매 식년(式年)[子·卯·午·酉年] 연초(年初)에 예조(禮曹)의 3 당상관이 같이 모여서 상세히 심사하여 의정부에 이송한 후에 별도의 명단으로 임금에게 품의한다.²⁾

이 조항은 『경국대전』에 있는 조항의 내용에 따른 절차를 보완한 것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여 대상자에게 포상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효자와 열녀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임금의 재가사항이라는 것이다. 정문(旌門)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사항도 임금의 전교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고, 효자와 열녀로 포상하는 문제도 결국 임금에게 보고해서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문제였다. 효자와 열녀에 대한 관심은 임금이 직접 관여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으며, 당시의 기준에서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금이 관심을 갖고 직접 포상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영조 대인 1746년에 간행된 『속대전』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된다.

○ 충신(忠臣)·효자(孝子)·순손(順孫)·열녀(烈女)로서 가난하여 구걸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미곡 5석(石)과 4계절에 옷 한 벌씩을 서울에서는 예조(禮曹)에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임금에게 보고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지방의 효자와 열녀 중에 남다른자를 관찰사가 상세하게 살펴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문(旌門)을 세워서 포상한다.³⁾

이 조항은 당시 충신, 효자, 순손, 열녀들 중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생계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 역시 임금이 직접 챙기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조선시대의 법전 규정에서 장려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충신, 효자, 열녀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포상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전체 포상 규정 중 맨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통해 이 규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포상 과정에서 임금과의 논의 후에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포상 절차에 임금이 직접 관

2) 『大典通編』 「禮典」 獎勸 조: 凡係旌閭贈職給復等事自政院奉承傳臚布中外 ○孝烈合旌復者諸道抄啓每式年歲首本曹三堂上齊會詳審移送政府後別單啓稟

3) 『續大典』 「禮典」 獎勸 조: ○忠臣孝子順孫烈女有貧寒乞丐者每歲米五石四節衣一領內則本曹外則觀察使啓聞題給. ○外方孝烈特異者觀察使詳察啓聞旌褒

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한 포상 문제에는 임금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국가 결정 사항이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조선 시대에 인성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IV. 성균관 「학령」 및 「학교모범」에서 확인되는 인성교육

「학령(學令)」은 유생들이 성균관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때 지켜야 할 수칙으로, 정확한 제정 시기와 주체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부터 시행된 성균관 교육에 관한 최고 법령이자 규칙이다. 「학령」의 여러 조항은 성균관을 비롯한 다른 관학, 즉 사학(四學)과 향교(鄕校)의 교육에도 준용되었다(조화태·박종배, 2010: 109). 따라서 「학령」에 나타난 규정들 중에 상당수는 사학이나 향교에서 그대로 사용되거나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1582년 이이(李珥)가 만든 「학교모범」은 「학령」을 보완하라는 선조의 명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저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학정(學政) 관련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헌장으로서, 조선조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교육정서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김경용, 2012: 5). 따라서 그 위상도 「학령」과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지로 『조선왕조실록』에서 「학교모범」과 관련된 논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모범」이 후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⁴⁾ 본 장에서는 성균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령(學令)」과 「학령」을 보완하고자 선조 대에 만든 「학교모범(學校模範)」에서 확인되는 인성교육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A. 성균관 「학령」에 나타난 인성교육

성균관 「학령」은 내용에 따라 모두 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인성교육

4) 『숙종실록(肅宗實錄)』 1681년(숙종7) 10월 1일자 기사; 『정조실록(正祖實錄)』 1783년(정조7) 7월 12일자 기사; 『고종실록(高宗實錄)』 1869년(고종6) 9월 29일자 기사 등에서는 당시의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이의 「학교모범」이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유생들 중 성현(聖賢)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고담이론(高談異論)을 좋아하고 선현을 헐뜯고 조정을 비방하며, 혹여 재물과 뇌물을 상이하고 논하거나, 주색을 이야기하거나, 혹여 시류를 좇고 권세에 빌붙어 이로써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자는 벌한다.

7. 유생들 중 오륜(五倫)을 범하는 죄를 짓거나 혹여 행실이 잘못되어 몸과 이름을 더럽힌 자가 있으면 유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복을 올려 성토하되, 심한 자는 담당 관서에 보고하여 종신토록 학교에 몸담지 못하도록 한다.

8. 유생들 중 혹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권세를 믿고 스스로 위세를 부리거나, 부유함으로 믿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나이 어린 자가 어른을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면서 윗사람을 능멸하는 자가 있거나, 혹 호사스러운 것을 서로 숭상하고 옷차림이 너무 요란하거나, 혹 교언영색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데 힘쓰는 자는 쫓아내되, 힘써 배우고 행실을 고치면 이에 중지한다.

9. 유생들이 무리 지어 왔다 갔다 하며 헛되이 국고만 낭비하고 수업도 받지 않고, 제술도 하지 않으며 독서도 좋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길을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모두 엄히 금한다. 위반한 자는 벌한다.

11. 유생들이 길을 가다 선생님을 마주치면 몸을 내보이고 공수(拱手)하며 길 왼편에 선다. 선생님이 말을 타고 지나가실 때 유생들 중 혹여 몸을 감추고 얼굴을 가려 예를 표시하기를 꺼리는 자는 벌한다.

13. 유생들 중 품행이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하며 시무에 통달한 자 한두 명을 매년 말 여러 유생이 함께 천거를 의논하여 학관에게 알리면 해당 관서에 보고하여 거용(擧用)하게 한다.⁵⁾

성균관 「학령」을 보면 첫 번째에서 5번째 조항까지는 문묘에 제사를 지내는 날, 공부하는 절차, 성균관에서의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한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그러다가 6번째 조항부터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유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생들 중에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되어 있다. 유생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인성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어떤 조항에서는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도 있고, 오늘날의 시대상과는 맞지 않는

5) 『太學志(태학지)』 권5, 「章甫(장부)」, 學令(학령) 조.. 해당 번역문은 조화태·박종배(2010), 109-110쪽 참고.

규정들도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유생들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추는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당시의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다운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당시의 성균관 「학령」은 인성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유생들 중에서 품행이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한 자가 있으면, 천거로 등용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문과(文科) 출신자들이 주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조선시대의 관리 등용 방식을 고려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규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부와 인성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로 바로 등용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균관 「학령」은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하여 규정하였다. 품행이 잘못된 유생은 엄히 벌하고, 품행이 바르고 재주가 탁월한 유생은 상을 주도록 하여, 유생들이 학업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균관의 「학령」은 성균관뿐만 아니라 향교의 「학령」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선시대 당시 향교나 서원의 규정은 기존의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상황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성균관 「학령」은 향교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북천향교학령(福川鄕校學令)」의 일부를 제시한다.

교생들 중 성현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혹여 고담이론을 좋아하고 선현을 헐뜯고 조정과 고을의 정치를 비방하며, 혹여 재물과 뇌물을 상의하고 주색을 이야기하는 자는 벌한다.

교생들 중 오류를 범하는 죄를 짓거나 혹여 잘못되어 몸과 이름을 더럽힌 자가 있으면 교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북을 울려 성토하되, 심한 자는 고을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여 천역에 배정하고 종신토록 학교에 몸담지 못하도록 한다.

교생들 중 혹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권세를 믿고 스스로 위세를 부리거나, 부유함을 믿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나이 어린 자가 어른을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거나, 혹 호사스러운 것을 서로 숭상하고 옷차림이 너무 요란하거나, 혹 다툼과 송사를 좋아하여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거나, 혹 교언영색으로 남에게 아침하는 데 힘쓰거나, 혹 기생이나 여색을 끌어들이며 춤추고 노래하며 놀다 기숙사 방에 묵게 하여 예교를 어지럽히고 학교를 욕되게 하는 자는 쫓아낸다. 행실을 고치면 곧 그친다.

교생들 중 품행이 탁월하고 학문이 해박하며 재주가 출중하고 시무에 통달한 자를 매년 향교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교관에게 천거하면 감사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고 조정의 천거 명령을 기다린다.⁶⁾

위에 제시한 「북천향교학령」의 조항들은 앞서 제시한 성균관 「학령」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균관 학령에서는 '조정'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북천향교학령」에서는 '조정과 고을의 정치'로, '해당 관청'이 '고을'로, '해당 관서에 보고하여 거용하는 것'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고 조정의 천거 명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한 편으로는 「북천향교학령」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에 여색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추가했듯이 해당 향교의 상황에 따라 내용을 일부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균관의 「학령」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전국의 많은 향교의 규정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늘날 향교의 학령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천향교학령」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향교의 학령이 성균관의 「학령」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균관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의 관학 시스템을 고려해보면 향교의 학령은 성균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B. 「학교모범」의 조항에 나타난 인성교육

1. 「학교모범」의 각 장에 나타난 인성교육

「학교모범」은 주제별로 모두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주제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장의 제목과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雪月堂先生文集(설월당선생문집)』 권4, 「福川郷校學令(북천향교학령)」一 諸生不尙論聖賢。或好爲高談異論。非壞前修。謗訕朝邑之政。或商論財賄。談說酒色者。罰。一 諸生有罪犯五倫者。或虧失節行。玷身汚名者。諸生通論。鳴鼓攻之。甚者或報告邑宰。定賤役。終身不齒於學。一 諸生或恃才自驕。恃勢自貴。恃富自矜。以少凌長。以下凌上者。或豪侈相尙。服飾違衆者。或好爲鬪訟。攘人利己者。或巧言令色。務悅於人者。或引致娼流女色。歌舞喧戲。止宿齋房。以亂禮教。汚穢學宮者。黜學擯斥。改行乃止。一 諸生有操行卓異。學問該博。才藝出衆。通達時務者。每歲抄諸生通議。薦舉告教官。申報監司置簿。以待朝廷辟舉之命. 번역문은 박중배(2006), 217-220쪽 참고.

〈표 1〉 「학교모범」의 목차와 관련 내용

장	제목	관련 내용
1	입지(立志)	뜻을 세움
2	검신(檢身)	몸을 단속함
3	독서(讀書)	책 읽기
4	신언(慎言)	말을 삼감
5	존심(存心)	마음을 지킴
6	사친(事親)	아버이를 섬김
7	사사(事師)	스승을 섬김
8	택우(擇友)	벗을 가림
9	거가(居家)	집에 거처함
10	접인(接人)	사람을 응접함
11	응거(應擧)	과거에 응시함
12	수의(守義)	의를 지킴
13	상충(尙忠)	충직함을 숭상함
14	독경(篤敬)	공경을 돈독히 함
15	거학(居學)	학교에 거처함
16	독법(讀法)	읽는 법

위의 표에 나타난 주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기에 지식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장은 그리 많지 않다. 독서(讀書), 응거(應擧), 거학(居學), 독법(讀法) 등 4개 장 정도만 지식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태도와 인간관계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 등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다. 16개 장 중에서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15장의 거학과 16장의 독법뿐이며, 다른 장들은 주로 인성이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장의 순서를 보아도 인성교육이 많이 강조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처음의 입지(立志), 검신(檢身), 독서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일단 입지를 통해 성인(聖人)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몸을 올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지식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입지, 검신, 독서의 순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신'에서는 '배우는 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반드시 예전 습성을 씻어버리고 배움을 향하여 몸가짐과 행동을 다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행동

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본격적으로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이전에 행동을 다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번째 장인 독서 장의 첫 부분에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나서는 반드시 독서와 강학(講學)으로써 의리를 밝혀야 하니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는 몸가짐을 단속하고 나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독서를 하기 전에 우선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학교모범」에 등장하는 공간과 관련된 장들의 순서이다. 전체 16개의 장중에서 교육공간과 관련된 장은 '거가(居家)', '접인(接人)', '거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세 장은 각각 9장, 10장, 15장에 배치되어 있다. 거가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접인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이므로 마을 내에서의 생활과 관계된 것이며, 거학은 학교에서의 생활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접인'은 단순히 뜻한 보면 '사람을 응접한다'는 뜻인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의 관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순서는 가정, 마을, 학교로 되어 있어서 학교가 맨 마지막에 놓여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에서 머무르며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좀 더 중시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정교육을 학교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가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접인' 장에서는 '덕업(德業)을 서로 권장하고, 잘못을 서로 바로잡고, 혼인·장례 때 서로 돕고, 예절 바른 풍속을 서로 이루고, 환란에 서로 도와⁹⁾'라는 구절도 등장한다. 흔히 우리가 향약의 내용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분이 「학교모범」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접인' 장의 내용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과 관련된 장들을 살펴봐도, 학교교육과 함께 가정교육을 중시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식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장들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어떠한 태도로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모범」에서 지식교육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독서, 응거, 거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a. 3장: 독서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나서는 반드시 독서와 강학(講學)

7) 『學校模範』, 「검신(檢身)」 조: 學者 既立作聖之志 則必須洗滌舊習 一意向學 檢束身行.

8) 『學校模範』, 「독서(讀書)」 조: 學者 既以儒行檢身 則必須讀書講學 以明義理.

9) 『學校模範』, 「접인(接人)」 조: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成 患難相恤

으로써 의리를 밝혀야 하니, 그런 뒤에 학문에 나아가야 공부의 방향이 흐리지 않는 것이다. 스승을 따라 수업하되, 배우기는 반드시 넓게, 질문은 반드시 자세하게, 생각은 반드시 신중하게, 분별은 반드시 명확하게, 깊이 생각하여 반드시 마음으로 체득하기를 기약하여야 한다. 언제나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태도를 정숙히 하고 단정히 앉아서 마음과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 한 책에 익숙해진 뒤에야 바야흐로 다른 책을 읽어야 하며, 범연히 많이 보기에 힘쓰지 말고, 억지로 기억만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독서의 순서는, 먼저 「소학(小學)」으로 그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대학(大學)」과 「근사록(近思錄)」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에는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과 오경(五經:周易·書經·詩經·禮記·春秋), 그리고 틈틈이 「사기(史記)」와 선현(先賢)의 성리(性理)에 관한 글들을 읽어서 의취(意趣)를 넓히고 식견을 가다듬어야 한다. 성인(聖人)의 글이 아니면 읽지 말고 보탬이 없는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여가에 때때로 기예(技藝)도 즐기되 이를테면 거문고타기, 활쏘기, 투호(投壺: 화살 같은 것을 병에 던져 넣는 유희) 등의 놀이는 모두 각자의 규범을 두어 적당한 시기가 아니면 노닐지 말 것이며, 장기·바둑 등의 잡희에 눈을 돌려 실제의 공부에 방해가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⁰⁾

이것은 책을 읽는 부분과 관련된 독서장이다. 이 장의 전체 구성 중에서 앞의 절반은 책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의 절반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독서 장에 소개되어 있는 독서의 순서인 '소학·대학·근사록·논어·맹자·중용·오경'으로 이어지는 독서 순서는 유학 지식인들에게는 매우 보편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책을 접할 때 어떤 자세로 접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 11장: 응거

과거는 비록 뜻있는 선비가 조금씩 서두를 것은 아니나, 또한 근세에는 그것이

10) 『學校模範』, 「독서(讀書)」 조: 三曰讀書。謂學者既以儒行檢身。則必須讀書講學。以明義理。然後進學功程。不迷所向矣。從師受業。學必博。問必審。思必慎。辨必明。沈潛涵泳。必期心得。每讀書時。必肅容危坐。專心致志。一書已熟。方讀一書。毋務汎覽。毋事彊記。其讀書之序。則先以小學。培其根本。次以大學及近思錄。定其規模。次讀論孟中庸五經。間以史記及先賢性理之書。以廣意趣。以精識見。而非聖之書勿讀。無益之文勿觀。讀書之暇。時或游藝。如彈琴習射投壺等事。各有儀矩。非時勿弄。若博奕等雜戲。則不可寓日以妨實功。 이하 학교모범 관련 번역문은 김경용(2012) 참고.

벼슬길에 들어가는 통규(通規)이다. 만일 도학(道學)에 전심하여 진퇴를 예의에 의해서 하는 이라면 그것을 숭상할 리 없지만, 혹 서울의 문물을 보고 과거를 보게 되면¹¹⁾ 또한 성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세월만 부질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 득실 때문에 그 지키는 지조를 잃어서는 안 되며, 또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道)를 행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품어야 하지, 구차스럽게 의식 너그러우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도에 뜻을 두어 게을리 하지 않고, 일상 하는 일이 도리에 따르지 않음이 없다면, 과거 공부도 일상사의 한 가지이니 실제의 공부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늘 뜻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득실(得失)으로써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요즈음 선비의 공통된 병폐는 태만하고 해이하여 글읽기에는 힘쓰지 않고, 스스로 도학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거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고, 학문이고 과거 공부고 다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가장 경계하여야 한다. (후략)¹²⁾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험을 보는 마음가짐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시험은 '선비가 조금씩 서두를 것'이 아니며, '도학에 뜻을 두어 예와 의에 따라 나아가거나 물러서는 이라면 그것을 숭상할 리 없지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과거시험을 보는 것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고자 할 때 이해득실 때문에 품어온 바를 잃어버리지 말고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학교모범」에서 말하는 '응거'는 시험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시험을 볼 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시험공부를 할 때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한 사람의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 15장: 거학

배우는 자가 학궁(學宮)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동지시를 일체 학령(學令)에 따라야 한다. 독서도 하고 제술(製述)도 하며 식후에는 잠시 거닐어 정신을 맑게 하고 들

11) 일국 또는 서울의 정교(政教)와 풍습을 관람한다는 말. 《易經 觀》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12) 『學校模範』 「응거(應舉)」 조: 謂科第雖非志士所汲汲 亦近世入仕之通規 若專志道學 進退以禮義者 則不可尙已 如或觀國之光 不免應舉 則亦當以誠心做工 勿浪過時月 但不可以得失 喪其所守 且常懷立身行道 忠君報國之念 不可苟求溫飽而已 (중략) 今人每患奪志者 不免以得失動念故也.(후략)

아와서 학업을 익히되 저녁 먹은 뒤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강론으로써 서로의 견식을 늘이고 위의(威儀)있는 몸가짐으로써 정제(整齊)하고 엄숙해야 한다. 만일 선생(곧 사장)이 학궁에 계시면 읍(揖)을 한 뒤에 질문하며 더 배우기를 요청하는데, 마음을 비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늘 잊지 말아야 하며, 무익한 글을 질문하여 심력(心力)을 헛되이 쓰게 하여서는 안 된다.¹³⁾

학교에서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거학에서도 지식보다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일체의 학령을 따르고 독서와 제술을 하는 것들은 지식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구절들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태도로 생활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학'부분에서도 결국은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지식을 쌓기 위한 태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학교모범」은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모범」에서는 인성교육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식이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성을 갖추는 것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교모범」의 선악적 관련 규정에 나타난 인성교육

「학교모범」 16장의 내용이 끝나고 뒷부분에는 선악적(善惡籍)과 관련된 부분이 등장한다. 선악적은 향약에서도 운영하기도 하고 향교에서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악적의 경우, 유생들 스스로가 유생들 중에 행실이 나쁜 학생들의 이름을 악적에 적고, 이들이 뉘우치기 전까지는 악적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악적에 이름이 올랐을 경우, 유생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품행과 덕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관리에 등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였다(박현준, 2012: 97). 오늘날로 보면 개별 학생의 행동발달사항 중에 특별한 경우를 따로 모아서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선악적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제도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學校模範』 「거학(居學)」 조: 十五日居學。謂學者居學宮時。凡舉止。一依學令。或讀書。或製述。食後暫爾游泳。舒暢精神。還習所業。夕食後亦然。羣居必講論相長。攝以威儀。整齊嚴肅。若先生是師長在學宮。則行揖之後。講問靖益。虛心受教。佩服周旋。如無益之書。不可請問。枉用心力。

위의 16조목(학교모범의 16개 조목)은 스승과 제자·벗들 사이에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며 힘써 명심하여야 한다. 유생들 중에 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몸을 잘 단속하여 모범을 준수하고 학문이 성취되어 뛰어나게 칭찬할 만 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회의 때 모두에게 물어서 승낙을 얻으면 선적(善籍)에 기입한다. 그 중에 더욱 남달리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 실상을 갖추어 사장에게 단자(單子)를 올려 권장의 뜻을 보이고, 만일 유생 중에 학규(學規)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향학의 의욕이 독실치 못하고 놀기만 하며 날을 보내고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농친 본 마음을 되찾지 못하며, 행동이 장중하지 않고 언어가 진실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가정의 법도가 난잡하여 질서가 없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며,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예법을 경멸하며, 본처를 소박하고 음란한 창기(娼妓)에 빠져 사랑하며, 부질없이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를 좋아하고 염치를 돌아보지 않으며, 함부로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사귀어 하류에게 굽실대며, 술을 즐겨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정에 빠지기를 낙으로 삼으며, 소송하기를 좋아하며 그만 둘만 한 일도 그만두지 않으며, 재물의 이익을 경영하여 남의 원망을 생각하지 않으며, 어질고 재능 있는 이를 시기하고 선량한 이를 헐뜯으며 붙이와 화목하지 않고 이웃과 불화하며, 제사에 근엄하지 않고神明(神明)에게 태만하며(일가의 제사뿐 아니라, 학궁의 제사에 평계대고 참가하지 않는 것도神明에게 태만한 것이다), 혼인·장례에 돕지 않고 환난에 돕지 않으며 지방에 있어서는 조부(租賦, 세금)에 성의를 다하지 않고, 고을 수령을 헐뜯는 일 등등의 잘못은 벗들이 보고 듣는 대로 서로 바로잡되, 고치지 않을 때에는 장의(掌議)에게 고하여 유사(有司)가 모임에서 드러내어 꾸짖는다. 만약 그래도 고치지 않은 채 굳이 변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작은 허물이면 출좌(黜座)를 하고 큰 허물이면 사장(師長)에게 고하여 출재(黜齋)한 다음(출재란 학궁에 올 수 없게 하는 것이며 허물을 고친 뒤에는 도로 오게 한다) 악적(惡籍)에 기입한다(출재된 자만 악적에 기입한다). 출재된 뒤에 마음을 바꾸고 허물을 고쳐서 뚜렷이 선을 지향하는 자취가 있으면 다시 학재에 들어오기를 허가하고(다시 입재할 때에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맞대어 놓고 꾸짖는다) 악적에 적은 이름을 지운다. 만일 끝내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나쁜 버릇만 더욱 키워 자기를 꾸짖는 이를 도리어 원망하면 사장에게 고하여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어 서울과 지방의 학당에 통고한다(제적된 자가 만일 자신을 원망하고 꾸짖어 선을 지향하는 자취가 뚜렷이 나타나기 3년을 지나 뒤에 그것이 더욱 도탑거든 도로 입학을 허용한다). 무릇 잘못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법규를 세운 뒤에 기록하며 만약 법규를 세우기 전의 잘못이라면 소급하여 논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고칠 길을 열어 주어도 여전히 고치지 않은 뒤에야 처벌을 논한다.¹⁴⁾

위의 규정에서는 선적과 악적에 올릴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선적에 올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악적에 올릴 사람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한 점이다. 아무래도 악적은 잘못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적어놓음으로써 이러한 악행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악적에 이름이 오른 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다. 잘못했다고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전까지 여러 번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번 처벌을 한 후에도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선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에게 알려져 선생님이 혼을 내도록 한다. 만약 작은 허물이면 출좌(黜座)를 하고 큰 허물이면 출재(黜齋)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좌는 좌석에서 내쫓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정학과 같은 개념이고 출재는 재에서 내쫓는 것이므로 오늘날 퇴학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그러므로 잘못 중에서도 사안이 매우 중하면 퇴학을 시키고, 그것보다는 덜 중한 경우 정학을 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퇴학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비로소 악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악적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악적에 이름을 올린 후에도 해당 유생에게 다시 반성할 기회를 주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해당 유생은 악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다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해당 유생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최소 3년간은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있으면 3년 후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와 같은 선악적은 오늘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조선

14) 『學校模範』 後辭: 右十六條。師弟子朋友。相與勸勉戒助。拳拳服膺。諸生如有存心飭躬。一遵模範。學問將就。表表可稱者。則會議時。詢于衆。得僉可則書于善籍。其中尤卓異者。具其實狀。呈單于師長。以示勸獎。如或諸生不遵學規。向學不篤。荒嬉度日。持身不謹。放心不收。行止不莊。言語不實。事親不盡其誠。兄弟不能友愛。家法雜亂無章。不敬師長。侮慢齒德。輕蔑禮法。疏薄正妻。昵愛淫倡。妄喜干謁。不顧廉恥。妄交非人。屈身下流。嗜酒放蕩。沈酗爲樂。好尚爭訟。可已不已。經營財利。不恤人怨。忌賢嫉才。誣毀良善。宗族不睦。鄰里不和。祀事不嚴。怠忽神明<不特一家祭祀。如學官之祭。託故不參。是怠忽神明>。禮俗不成。患難不救。如外方則不謹租賦。譏詆邑主。如此過失。朋友隨所聞見。各相規警。不悛則告掌議有司。於衆會顯責之。若猶不悛。強辨不服。則輕則黜座。重則告于師長黜齋<黜齋者。不得來學。改過後還來>。書于惡籍<只黜齋者。書于惡籍>。黜齋之後。革心改過。顯有向善之迹。則還許入齋而爇其籍<還入齋時。滿座面責>。若終不悔過。長惡益甚。反怨責己者。則告于師長。削其名籍。因通文于中外學堂<削籍之人。若自怨自艾。顯有向善之迹。過三年而益篤。則還許入學>。凡過失之籍。必自立法後始錄。若法前之惡。皆勿追論。許其自新。仍舊不改。然後乃論罰。

시대의 선악적을 통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자는 과거시험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도 같이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선적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인격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성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은 과거시험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악적에 이름을 올린 후에 '만일 끝내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나쁜 버릇만 더욱 키워 자기를 꾸짖는 이를 도리어 원망하면 사장에게 고하여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어 서울과 지방의 학당에 통고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때, '서울과 지방의 학당에 통고한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향교와 서원에 학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하고, 향교 내에 과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향교에서는 『부거유생도목』이라는 문서를 서울로 보내서 해당 학생이 이번 과거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만약에 악적에 이름이 올라가서 서울과 지방의 학당에 통고가 되면,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부거유생도목』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의 과거 시험 응시는 제한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실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과거 응시가 제한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시사점은 선악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선악적의 주목적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비록 악적에 유생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성하고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악적에서 이름을 지워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악적에 이름이 올랐을 때 우선 반성할 기회를 주어 그 때 반성하면 다시 악적에서 이름을 지운다. 설령 이 때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학적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3년 후에 다시 입학할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충분히 확인한다. 대신에 이미 잘못을 반성한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전에 악적에 올라간 기록은 지워버렸다.

물론 의무교육이 아니었던 조선시대의 향교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초등 학교, 중학교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한 번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그 기록이 끝까지 남아서 오히려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좀 더 교육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 선악적을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인성교육을 중요시했던 조선시대의 교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교육을 강조하다보면 인성교육이 부족해진다는 문제제기는 항상 있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바로 선악적이었다. 제도적으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영원이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해당 학생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었다. 이를 통해 징계가 처벌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까지 같이 지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V. 서원 규정에서 확인되는 인성교육

본 장에서는 서원의 규정에서 확인되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원은 우리나라에 16세기 이후에 생겨나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17세기 이후 크게 발전하였으며, 조선조 말까지 향교와 더불어 조선후기 교육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서원의 학규(學規)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황(李滉)의 「이산서원원규(伊山書院院規)」와 이이(李瑋)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이다. 이들 규정은 후대 다른 서원이나 향교의 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들 규정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았다.

이산서원은 1554년(명종9)에 경상도 영천에 세워진 대표적인 초기 서원 중 하나이다. 퇴계는 이산서원의 설립에 초기부터 관여하였으며 이산서원의 원기(院記)를 짓고 원규(院規)를 정하였다. 이산서원의 원규는 모두 12개 조항을 되어 있으며, 12개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아래와 같다.

〈표 2〉 『이산서원원규』의 각 조항별 내용

조항의 순서	조항의 내용
1	독서 방법
2	유생의 기본 태도
3	공부할 때의 태도
4	학교 생활에서의 태도
5	참고할 만한 좋은 글귀
6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7	유사(有司)의 자격
8	유사(有司)에 대한 예의
9	하인에 대한 태도
10	고을 수령이 해야 할 일
11	서원의 출입 자격
12	청강생 규정

이 중에서 인성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조항은 2, 6, 8, 9번째 조항이다. 이들 조항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유생들이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지향하는 바를 바르게 하며, 학업은 원대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를 귀착할 바로 삼는 것이 선학이다. 그 마음 씩씩이가 비천하고 취사선택이 분명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저속하고 비루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오직 이욕에 뜻을 두고 바라는 것은 비학이다. 만약 성행이 상도와 어긋나고 예법을 비웃으며 성현을 모욕하고 경전과 도리에 어긋나고 추한 말로 부모를 욕되게 하고 무리를 해치고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원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쫓아낸다.

6. 서책은 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여색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술은 빚을 수 없고, 형벌은 쓰지 못한다. 서책은 나가면 잃어버리기 쉽고, 여색은 들어오면 더럽히기 쉬우며, 술은 빚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고, 형벌은 유생의 일이 아니다(형벌이란 유생들 또는 유사가 사적인 노여움 때문에 외부인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서원에 속한 하인들에게 죄가 있어 그냥 용서할 수 없다면 사향이 작은 일은 유사가 처리하고 사향이 큰 일은 상유사와 함께 의논하여 논벌한다).

8. 유생(儒生)들과 유사(有司)는 예모로 서로 교제하고 공경과 신뢰로 서로 대하기에 힘써야 한다.

9. 서원에 속한 하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유사와 유생들은 항상 하인을 애호하고, 서원이나 재의 일이 아니면 누구도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며, 사적인 노여움으로 벌을 주어서도 안 된다.¹⁵⁾

위의 인용문에서는 「이산서원원규」 중에 4개 조항만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들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 및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부분으로, 우리가 흔히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과 관계된 조항이다. 하인을 때리지 말고 잘 돌봐주며, 유생들과 유사는 서로 공경과 신뢰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 학교 규

15) 『退溪先生文集(퇴계선생문집)』 권14, 「伊山院規(이산원규)」, 一。諸生立志堅苦。趨向正直。業以遠大自期。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其處心卑下。取舍眩惑。知識未脫於俗陋。意望專在於利欲者爲非學。如有性行乖常。非笑禮法。侮慢聖賢。詭經反道。醜言辱親。敗羣不率者。院中共議擯之。一。書不得出門。色不得入門。酒不得釀。刑不得用。書出易失。色入易汚。釀非學舍宜。刑非儒冠事。[刑謂諸生或有司以私怒捶打外人之類。此最不可開端。若院屬人有罪。則不可全赦。小則有司。大則與上有司同議論罰。] 一。諸生與有司。務以禮貌相接。敬信相待。一。院屬人完恤。有司與諸生。常須愛護下人。院事齋事外。毋得人人私使喚。毋得私怒罰。 번역문은 박종배(2006), 226-228쪽 참고.

정에 포함되어 있다.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인성교육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다른 조항들에서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주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 조항들도 언뜻 보면 지식에 대한 공부에만 관련된 조항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보면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산서원원규」는 인성교육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은병정사(隱屏精舍)는 1576년(선조9)에 율곡 이이가 황해도 해주에 설립하였다. 「은병정사학규」는 모두 22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초반의 4, 5개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 어떠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은병정사학규」의 각 조항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은병정사학규』의 각 조항별 내용

조항의 순서	조항의 내용
1	입학절차
2	유생 중 임원
3	제사 절차
4	기상 후 해야 할 일
5	기상 후 예절
6	소지품 정리
7	식사 예절
8	연장자에 대한 예의
9	걸을 때의 예절
10	언어 예절
11	읽어야 하는 책의 범위 규정
12	평상시의 용모
13	식사 후 산책 시 태도
14	교우 관계
15	글씨 쓰는 태도
16	평소의 몸가짐
17	평소의 공부 시간
18	하루의 목표 수립
19	집에서의 태도
20	선악적 관련 규정
21	강회 이외의 공부 모임에 관한 규정
22	정식 학생이 되기 이전의 절차

「은병정사학규」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입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조항이다. 「은병정사학규」의 첫 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재에 들어오는 규칙으로는 사족과 서류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입재를 허락하되, 먼저 재에 들어온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와도 좋다고 한 연후에 입재를 허락한다. 만약 전일에 패악했던 사람이 들어오고자 하며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수척하게 한 다음 그 소행을 자세히 관찰하여 행실이 고쳐졌음을 확실히 안 뒤에 입재를 허락한다. 평소에 내력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로 하여금 잠시 가까운 마을이나(혹은 양정재) 산사에서 왕래하며 공부하도록 하여 그 취지와 조행을 관찰하여 취해도 좋을지를 안 뒤에 입재를 허락한다.¹⁶⁾

이 조항에서는 사족과 서류를 막론하고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입재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행실이 나빴던 사람이 들어오고자 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다시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의 내력을 모른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왕래하면서 본인의 학문적 능력과 학문에 임하는 태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입학할 수 있었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서원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나 품성이 형성된 이후에 들어오게 되므로, 입학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은 학풍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다. 「은병정사학규」에서는 학문에 뜻이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만, 성품이 검증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입학 조건에서 그 사람의 지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학업능력과 인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산서원원규」나 「은병정사학규」의 내용은 단순히 해당 서원의 규정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 두 학규는 조선시대 서원이 막 태동하여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제정되어 초기 서원교육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조 말까지 지속적으로 서원교육에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조화태·박종배, 2010; 139)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의 규정에서도 「이산서원원규」나 「은병정사학규」를 따르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무안향교의 '교규(校規)'는 그 조항 중 상당 부분에서 「은병정사학규」를 원용하고 있다. 무안향교교규는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의 '입교지규(入校之規)', 제4조의 '거처(居處)', 제5조의 '의관(衣冠)', 제6조의 '언어(言語)', 제7조의 '음식(飲食)', 제8조의 '붕우(朋友)', 제9조의 '독서(讀書)' 관련 조항 등은 「은병정사학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10조 '圖書 不得出門 酒色 不得入門(책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술과 여색은 문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은 퇴계의 「이산서원원규」를 연상하게 한다(박종배, 2006; 220).

「은병정사학규」와 「이산서원원규」의 조항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여러 세부 조항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규정의 영향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다른 서원이나 향교에서도 이를 강조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성교육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시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인성교육 관련 규정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栗谷先生全書(울곡선생전서)』 권15, 「隱屏精舍學規(은병정사학규)」 一. 入齋之規。勿論士族庶類。但有志於學問者。皆可許入。齋中先入者。僉議以爲可入。然後乃許入。若前日悖戾之人願入。則使之先自改過修飾。熟觀所爲。決知其改行。然後許入。素昧平生者願入。則使之姑接近村。或養正齋 或山寺往來問學。觀其志趣操履。知其可取。然後許入. 번역문은 박종배(2006), 228-229쪽 참고.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법전과 학교의 교육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선시대 법전에 근간이 되는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속대전』, 『대전회통』, 『대전통편』 등에 나타난 규정을 중심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 인성교육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성균관, 향교, 서원 등의 규정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선시대에도 국가 및 학교 수준에서 꾸준히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향교의 규정이 성균관 「학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서원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인성교육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조직이 전국적인 단위를 이루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둘째, 전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공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학교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가정교육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그러한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도 학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시대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셋째, 인성교육에 대한 규정을 분석한 결과 예(禮)나 효(孝)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 이외에 최근 인성교육에서 강조되는 타인의 이해, 공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역량 등도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 유생들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아랫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학교 차원의 고민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시대의 인성교육이 오늘날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 또한 존재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교육 중 유교 이외의 불교, 도교와 관련된 인성교육적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와 도교 사상도 우리의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 이외의 전통 사상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강조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조선시대 이외의 시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인데,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사례를 통해 의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우리의 교육전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교육 사례만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인성교육에 관하여 한국과 다른 유교문화권의 국가들 그리고 서양의 국가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부분 서구화가 진행된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전통을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는 현재 우리의 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른 국가 및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인성교육만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 눈앞에 놓인 인성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인성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고민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성교육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조상들의 지혜에서 해답을 찾는 것과 동시에,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관해 좀 더 다양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라면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방증이므로 장기적이고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교육 관련 규정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인성교육의 실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Gyeonggukdaejeon]
- 『대전통편(大典通編)』 [Daejeontongpyeon]
- 『대전회통(大典會通)』 [Daejeonhoetong]
-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 [Seolwoldangseonsaengmunjip]
- 『속대전(續大典)』 [Sokdaejeon]
- 『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Yulgokseonsaengjeonseo]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Joseonwangjosillok(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Jeungbomunheonbigoo]
- 『태학지(太學志)』 [Taehakji]
-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Toegyeseonsaengmunjip]

『학교모범(學校模範)』 [Hakgyomobeom]

『학교사목(學校事目)』 [Hakgyosamok]

2. 연구논저

김경용 (2004).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16(2), 1-25.

[Kim, K. Y. (2004). A study on executive procedure of public examination system of Chosen Dynasty.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16(2), 1-25.]

김경용 (2008). **장서각 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 권1. 서울: 민속원.

[Kim, K. Y. (2008). *Interpretation of education-test related materials of Jangseogak* (Vol. 1). Seoul: Minsokwon.]

김경용 (2012). **조선의 교육헌장**. 서울: 원미사.

[Kim, K. Y. (2012). *Charter of education in Chosun*. Seoul: Wonmisa.]

김용환 (2015). 조선의 인성교육 범례 연구. *윤리교육연구*, 37, 139-157.

[Kim, Y. H. (2015). A Study on the paradigms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Chosen dynasty. *Journal of Research in Ethics Studies*, 37, 139-157.]

남상호 (2016). 서원의 인성교육 - 철학치유의 방법을 찾아서. *인문과학연구*, 49, 377-406.

[Nam, S. H. (2016). The education of humanism in Shuyuan(Academy). *Studies in Humanities*, 49, 377-406.]

박의수 (2007). 유가적 전통에서의 인성교육. *교육문제연구*, 28, 1-22.

[Park, E. S. (2007). Character education in the Confucianism tradi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8, 1-22]

박종배 (2006). 조선시대 학령 및 학규. *한국교육사학*, 28(2), 213-237.

[Park, J. B. (2006). Hakryeong and Hakgyu in Joseon dynasty.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28(2), 213-237.]

박현준 (2012). **조선시대 선악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ark, H. J. (2012). *A study of Saanakjaek in Chosoon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유한구 (1996). 인성교육의 한국적 전통. *초등교육연구*, 10(1), 135-151.

[Yoo, H. K. (1996).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traditional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0(1), 135-151.]

이인재 (2016).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적 접근과 교사의 역량. *윤리교육연구*, 39, 271-300.

[Lee, I. J. (2016). Systematic approach of character education in Seoul and competences of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in Ethics Studies*, 39, 271-300.]

교육부 (2015). **인성교육진흥법**. 세종: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Promotion of Character Education Ac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조정호 (2016).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4, 421-448.

[Joh, J. H. (2016). A study on problems and causes of Promotion Law of Character Education. *Studies in Humanities*, 34, 421-448.]

조화태 · 박종배 (2010). **교육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Cho, H. T., & Park, J. B. (2010). *History of Education*. Seoul, South Korea: KNOU Press.]

홍신기 (2007). 논어에 나타난 교육사상의 전인교육적 의미 탐색. *초등교육학연구*, 14(1), 233-250.

[Hong, S. K. (2007). A study on whole person education meaning of Confucious educational thoughts on the analec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4(1), 233-250.]

Lickona, T. (1996). 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25(1), 93-100.

Roseth, C. J. (2015). Character education, moral education, and moral-character education. In L. Corno & E. M. Anderman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pp. 213-225). New York: Routledge.

이상무 (nopproblem@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대학평가연구기획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임. 조선시대 과거제도 및 학교제도가 주요 연구 주제임.

신태섭 (tshin@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임. 학습자의 비인지적 역량,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협동학습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